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 2019-115

제 출 자

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거창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(안 제2조)
 - 1) 매년 수립·시행
 - 2) 추진사항 정기 또는 수시 점검
- 나.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(안 제3조)
 - 1)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,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7조·제10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9. 9.~9. 30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.
- 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
- 2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